

2026년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선정 결과

(단위:천원)

연번	공동주택명	보조금 신청내용	총사업비(원)	지원결정금액(원)
1	신라	경비실 에어컨 설치	850	425
2	주안현대홈타운	경비실 에어컨 설치	850	425
3	용현금호타운2단지	관리동 화장실 공사	14,850	7,425
합 계				8,275

※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관련 안내

1. 관리주체는 심의·결정 및 사업결과(정산포함) 등을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.(조례 제8조)
2. 심의·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(조례 제8조)
3.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 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.(조례 제8조)
4.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자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(조례 시행규칙 제6조)
5. 지원된 보조금은 신청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(조례 시행규칙 제7조)
6.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지급합니다.(조례 시행규칙 제7조)
7.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, 공사내역, 공사금액, 보조금,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(조례 시행규칙 제9조)
8.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조례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.(조례 시행규칙 제10조)
9.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례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합니다.(조례 시행규칙 제10조)